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를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1.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중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를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로,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1조제11항 중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터키와 지체”를 “튀르키예와 지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7조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터키와의 협정에”를 “튀르키예와의 협정에”로,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을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터키 또는”을 “튀르키예 또는”으로,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을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9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1 중 010121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101219000	기타	0.0	
------------	----	-----	--

별표 1 중 0403201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03201000	역제 상태인 것		
	- 제1901.90.2010호의 것, 제1901.90.2020호의 것	미양허	
	- 기타	0.0	

별표 1 중 0403202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03202000	냉동한 것		
	- 제1901.90.2010호의 것, 제1901.90.2020호의 것	미양허	
	- 기타	0.0	

별표 1 중 040320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03209000	기타		
	- 제1901.90.2010호의 것, 제1901.90.2020호의 것	미양허	
	- 기타	0.0	

별표 1 중 0410100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10100000	근종		
	- 제0208.90.9090호의 것	미양허	
	- 기타	0.0	

별표 1 중 07119050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1905099	기타		
	- 양파 또는 케이퍼	미양허	
	- 기타	0.0	

별표 11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주석의 “한-터키 FTA”를 “한-튀르키예 FTA”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⑨ (생략)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1과 같다.	⑩ -----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 튀르키예를 ----- -----.
⑪ ~ ⑬ (생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13조(채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채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터키: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6. 튀르키예: ----- --
7. ~ 16. (생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터키</u> 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u>터키와의</u> 협정 제4.2조제7항 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 <u>튀르키예</u> 를 ----- <u>튀르키예와의</u> ----- -----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 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 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 우로 한정한다), <u>터키</u> , 콜롬비 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 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 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 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 화 대상국가) ----- ----- ----- ----- ----- <u>튀르키예</u> ----- ----- ----- ----- ----- -----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 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 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	① ----- ----- ----- ----- ----- ----- -----

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 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유럽연합당사자, <u>터키</u> , 캄보 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 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 기 15일 전	3. ----- <u>튀르키예</u>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 자와의 협정 제3.12조, <u>터키와의</u>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 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 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u>터키</u> ,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 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 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 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⑤ ----- <u>튀르키예</u> <u>와의</u> ----- ----- ----- ----- ----- <u>튀르</u> <u>키예</u> , ----- ----- ----- ----- -----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
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
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 ⑧ (생략)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당사자,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제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⑩ (생략)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터키와의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튀르키예 또는

----- 튀르키예와의

⑩ (현행과 같음)

⑪ -----
 --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

 ----- 튀르키예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 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⑫ ~ ⑭ (생략)

제32조(채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터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

와의 -----

----- 튀르키예, 베트남, 영
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32조(채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튀르키예의

----- 튀르키예와의 협
정에 -----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

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⑥ ~ ⑭ (생 략)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 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 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튀르키예 -----

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튀르키예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당사자, 페루,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⑪ ~ ⑬ (생략)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② ~ ⑥ (생략)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의 해제)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결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 튀르키예 -----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
에서 정하는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
우 90일 이내에 -----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_____.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2